



누가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(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)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?

과세연도 2018 년 및 이후:

- 뉴욕주 조정 총소득이 최소 \$50,000 이상 \$150,000 이하인 납세자의 공제액이 증가하였습니다.
- 두 명 이상의 자격 있는 자를 부양하는 납세자의 공제 가능한 비용 한도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습니다.
 - 세 명의 자격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\$7,500
 - 네 명의 자격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\$8,500
 - 다섯 명 이상의 자격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\$9,000
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연방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(연방 세액공제를 청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음). 본 공제 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Form IT-216(양식 IT-216), *Claim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(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청구하기)* 및 관련 지침 사항(영어버전만 이용 가능)을 참고해 주십시오.

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?

공제액은 연방 공제액의 최소 20%이거나 연방 공제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납세자의 뉴욕주 조정 총소득액, 자격 있는 부양가족 수, 지급한 자격 있는 지출액에 따라 다릅니다.

자료보관 요구사항

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해당 공제에 대한 자격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.

- 지급 완료된 수표 또는 우편환 및
- 조세국(Tax Department)에서 확인 가능한 지급 시 받은 현금 영수증

자료보관 의무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Form DTF-216(양식 DTF-216), *Recordkeeping Suggestions for Child Care Expenses(자녀 양육비에 대한 자료보관 제안사항)*(영어버전만 이용 가능)를 참조하십시오.

본 공제를 신청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, Form IT-216(양식 IT-216), *Claim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(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청구하기)* 및 관련 지침 사항 (영어버전만 이용 가능)을 참조해 주십시오.

연방 세액공제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, 연방 IRS Publication 503(국세청 간행물 503), *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(자녀 및 부양가족 양육비)*를 참조해 주십시오.

유의 사항: 이 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액보다 많은 경우, 차액은 환급 처리될 것입니다. 단, 1년 내내 거주한 경우만 해당합니다.